

창원지방법원 2023. 1. 19 선고 2022나53188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창원지방법원 2023. 1. 19 선고 2022나53188 판결

창원지방법원 2022. 2. 15 선고 2020가단119069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기술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정석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홍승규

피고, 항소인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성, 담당변호사 김갑수

변론 종결2022. 11. 17.

판결 선고2023. 1. 19.

제1심판결창원지방법원 2022. 2. 15. 선고 2020가단119069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B과 피고 사이에 2019. 7. 4.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B에게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2019. 7. 8. 접수 제6099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된 자료를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판결문 제3쪽 제13행 '2019. 12.말'을 '2018. 12.말'로 고친다.

나. 제1심판결문 제4쪽 제12행, 제9쪽 제2행 '2019. 8. 28.'을 '2019. 8. 27.'로 각 고친다.

다. 제1심판결문 제4쪽 제14행 '2019. 11. 20.'을 '2019. 12. 6.'로 고친다.

라. 제1심판결문 제4쪽 제20행 '7호증' 다음에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를 추가한다.

마. 제1심판결문 제7쪽 제13행 '제출명령'을 '제출명령결과'로 고친다.

바. 제1심판결문 제9쪽 제5행 '자금을'을 '자금이'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홍득관

판사윤정

판사이큰가람

별지